

방송광고거래 이용약관

(직거래 광고주용)

2014. 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방송광고거래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법'이라 합니다)에 의거 방송법에 의한 국내 각 방송사업자(이하 '매체사'라 합니다)의 방송광고판매를 대행하는 주식회사 미디어렙에이(이하 '미디어렙'이라 합니다)와 직접 방송광고를 하고자 하는 광고주간에 방송광고 거래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신고, 변경 및 적용 등)

- ①이 약관은 미디어렙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한 것이고,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합니다.
- ②미디어렙은 이 약관을 당사 홈페이지(<http://www.mediaarpa.com>)에 게시하고, 광고주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미디어렙이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 홈페이지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한 내용을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까지 공지합니다. 광고주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통지하며, 변경 약관을 공지한 후 7일 이내에 광고주의 명시적인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광고주가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④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광고주는 방송광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광고주가 변경 후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미디어렙은 방송광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이 약관은 매체사로부터 위탁받은 방송광고의 판매대행업무에 적용하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기타 관련 고시 및 '방송광고 계약서'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 ⑥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과 미디어렙법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 고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장 방송광고 계약 체결

제3조 (제출서류)

- ①미디어렙과 방송광고 거래를 원하는 광고주는 방송광고거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디어렙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법인 : 법인 등기부등본 1부(최근 3개월내 발급분)
 2. 법인,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개인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또는 개인 인감증명서 1부(최근 3개월내 발급분)

4. 광고주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제4조 (계약체결)

①광고주는 방송광고를 청약하기 전에 미디어렙과 방송광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단, 미디어렙과 광고주가 합의할 경우 최종 청약 확정된 방송광고 운행안으로 방송광고 계약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방송광고거래신청서 및 본 약관 제3조 각 호의 서류는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②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미디어렙과 광고주가 방송광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방송광고와 관련한 모든 업무처리사항은 본 약관을 따릅니다.

제3장 방송광고 요금 및 적용

제5조 (방송프로그램의 길이)

①방송프로그램의 길이는 매체사가 미디어렙에게 제공한 방송프로그램 편성표상의 길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제1항의 방송프로그램의 길이는 광고 및 방송예고시간 등이 포함된 것이므로 실제 방송시간은 방송프로그램 편성표상의 길이보다 단축될 수 있습니다.

제6조 (방송광고 요금 및 시급)

①방송광고요금(이하 '광고료'라 합니다)과 방송광고시급(이하 '시급'이라 합니다)은 미디어렙의 방송광고요금표에 따릅니다.

②방송광고요금표는 미디어렙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거나 개별 광고주의 열람, 교부 요청이 있을 경우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로 제출합니다.

③방송광고가 복수의 시급에 걸쳐 방송되는 경우, 토막광고와 자막광고는 높은 쪽의 시급을 적용합니다.

④방송광고가 다른 시급으로 변경되어 방송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시급을 적용합니다. 단, 가상광고는 시급이 변경되어 방송된 경우에도 당초 청약한 광고료를 적용합니다.

1.방송프로그램의 전후 방송프로그램 광고가 각각 청약당시 방송프로그램 편성표보다 낮은 시급으로 변경되어 방송된 경우, 광고료는 변경된 시간대의 기본 방송프로그램 광고료에 준하여 재산정합니다. 단, 높은 시급으로 변경 방송된 경우에는 당초 청약한 광고료를 적용합니다.

2.토막광고 및 자막광고가 낮은 시급으로 10분 이상 변경되어 방송된 경우에는 실제 방송된 시급의 광고요금을 적용합니다. 단, 시급이 2시급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최종 변경된 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3.제1호의 시급변경을 동반한 시보광고의 시급변경에 따른 광고료는 변경된 시간대

의 기본 방송프로그램에 준하여 산정합니다.

제7조 (편성변경에 따른 청약변경)

- ①미디어렙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와 공공적, 사회적 필요 및 매체사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기본방송프로그램(정규방송)이 변경된 때에는 광고주가 청약한 방송광고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제1항의 시간변경으로 인한 광고료는 본 약관 제6조를 준용합니다. 단, 간접광고료는 당초 청약한 간접광고료를 적용합니다.

제8조 (운행불일치)

- ①미디어렙의 영업대행업무 수행 중 미디어렙 또는 매체사의 착오로 방송광고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방송되지 아니한 때(광고소재 착오, 방송광고기간 착오, 구 광고소재 사용, 초수 잘림, 비디오 및 오디오 불량, 시간대 착오, 법적 허용량 초과 방송광고물 등)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광고료를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 ②광고주의 사정으로 방송광고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방송되었을 때에는 광고료를 광고주가 부담합니다.
- ③광고주가 청약하지 않은 방송광고가 방송된 경우에는 광고료를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 (개편)

- ①방송광고 청약기간 중 매체사가 방송프로그램을 개편하였을 때에는 미디어렙은 광고주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단, 미디어렙 홈페이지에 개편 공지로 통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②광고주가 개편 전 방송프로그램에 개편 전 청약한 방송광고시간대 또는 해당 프로그램으로 계속 방송광고를 하고자 할 경우 우선적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제4장 방송광고 청약 및 판매방식

제10조 (방송광고 소재)

방송광고 소재는 심의필한 소재를 광고주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코바코'라고 합니다)의 KODEX에 등록하거나 방송광고 소재 테이프를 직접 매체사에 제출하여 방송되도록 합니다.

제11조 (방송광고의 청약)

- ①광고주가 방송광고를 청약하고자 할 때에는 미디어렙의 방송광고판매시스템을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방송광고청약서(최종 확정된 방송광고 운행안으로 대체 가능함

니다)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②제1항의 방송광고 청약에 의한 방송광고기간은 미디어렙과 광고주가 상호협의를 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판매방식)

①미디어렙은 다음 각 호와 같은 판매방식을 운영하며 관계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에서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판매방식의 운영도 가능합니다.

1.복수의 방송광고를 하나의 상품으로 구성하여 판매하는 패키지 판매방식

2.방송광고판매기간에 따른 판매방식

가. 장기물판매 : 6개월 이상 단위 판매

나. 정기물 판매 : 1~3개월 단위 판매

다. 임시물 판매 : 1개월 이하 단위 월중 수시 판매

3.미디어렙이 사전 지정한 방송광고를 보다 높은 광고료를 제시하는 광고주에게 판매하는 선매(Preemption) 판매방식

4.광고주가 방송프로그램광고 순서지정 대가를 부담하기로 하고 사전에 순서를 지정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높은 지정금액 순으로 미디어렙이 방송프로그램광고의 방송순서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프로그램광고 순서지정 판매방식

5.시청률요인, 방송광고시장의 수요, 공급요인 등을 고려하여 방송광고 청약자에게 시청률, 청약횟수 등을 보장하거나 광고료에 따라 청약횟수 등을 제시하는 판매방식

②미디어렙은 관계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방송광고 판매방식의 변경, 폐기도 가능합니다.

③미디어렙은 방송광고 판매방식에 따라 방송광고요금표상 광고료의 할인, 할증 및 무상의 방송광고시간 추가제공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④제1항에 따른 판매방식 및 그 변경이나 폐지, 제3항에 따른 광고료의 할인, 할증 및 무상의 방송광고시간 추가제공 등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로 통보하거나 광고주와 협의하여 확정된 최종 운행안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방송광고 결합판매)

미디어렙은 필요할 경우 방송광고 영업대행 계약을 체결한 각 매체사 상호간에 방송광고를 결합(패키지판매 포함)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광고판매의 제한)

미디어렙은 광고주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약관 제12조의 광고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미디어렙의 방송광고중지)

①미디어랩은 광고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주의 청약에도 불구하고 매체사에 광고운행 의뢰를 아니할 수 있으며, 광고운행 의뢰를 한 경우에도 매체사에 방송광고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본 약관을 위반하였을 경우
- 2.광고료 지불이 2개월 이상 연체되었을 경우
- 3.기타 관계 법률에 저촉되어 방송광고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광고주의 방송광고중지)

광고주는 방송광고 청약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방송광고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디어랩에게 3영업일 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5장 광고료 지급 및 지급보증

제17조 (광고료의 지급)

- ①광고료는 방송광고 청약시 현금 선입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후불 납부시 광고주는 본 약관 제18조에 따라 지급보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청약한 광고료에 대해 미디어랩의 청구에 따라 방송광고를 한 당월의 광고료를 미디어랩에 익월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로 합니다.
- ③광고주는 광고료에 대해 당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평균 3개월 이내에 현금화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타 이외의 방식으로 지급할 경우 미디어랩과 합의 후 지급하여야 합니다.
 - 1.현금
 - 2.광고주가 발행한 수표 또는 은행도 약속어음
 - 3.한국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된 상장회사(이하 '상장회사'라 합니다)가 발행하거나 배서한 수표 또는 은행도 약속어음
 - 4.표지어음
 - 5.광고주의 기업구매 전용카드, 외담대(매담대) 등 전자결제
- ④광고주가 광고료 결제방식을 현금으로 선택시 제2항의 기일 내에 광고료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급기일 조정을 미디어랩에 요청을 하고 그 요청에 대해 미디어랩과 사전 합의후 지급기일을 조정할 수 있으나, 정해진 지급기일(익월말)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 ⑤광고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3항에서 정한 3개월 이내 현금화가 안되는 결제방식으로 결제할 경우 방송광고 청약전에 미디어랩과 합의하여야 하며, 그 늘어난 기일만큼 지급보증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제18조 (지급보증 제출)

광고주가 본 약관 제17조 제2항에 따라 후불로 광고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미디어렙에게 본 약관 제19조 각 호의 방식에 따른 지급보증을 청약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9조 (지급보증 방식)

광고주는 광고료에 대한 지급보증으로서 미디어렙에게 다음 각 호의 하나 또는 병용하여 방송광고 청약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1.정부에서 인가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 은행지급보증서 등)
-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발행 채권, 산업금융채권
- 3.금융기관의 예·적금 통장

단, 미디어렙을 질권자로 하여 금융기관의 질권설정 승낙을 요합니다.

제20조 (지급보증 금액)

광고주의 지급보증금액은 당월 청약한 방송광고금액과 기 발생한 방송광고금액에 대한 본 약관 제17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결제방식의 현금화까지 발생한 외상거래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단, 미디어렙은 본 약 제23조에 따라 지급보증 금액 및 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합니다.

제21조 (지급보증 차감)

채무상환 능력이 우수하다고 미디어렙에서 인정한 광고주 또는 상장회사가 발행하거나 배서한 수표 또는 은행도 약속어음, 표지어음을 광고료로 입금하거나 담보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본 약관 제20조에서 요구하는 지급보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단, 상장기업이 발행하거나 배서한 어음이라도 부실채권 발생 우려가 있는 어음의 경우에는 차감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지급보증의 교체, 연장, 금액변경)

①광고주는 본 약관 제19조 각 호의 지급보증의 만기가 도래할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체, 연장하여야 합니다.

- 1.제19조 제1호, 제2호의 지급보증은 보증기간 만료일 1개월 전 교체
- 2.제19조 제3호의 지급보증은 보증기간 만료일 5일 전 교체

②미디어렙이 광고주의 신용등급 변동을 비롯하여 계약·거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 또는 발생도래에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미디어렙의 요청에 따라 미디어렙과 광고주는 지급보증금액의 추가 또는 변경 계약을 체결합니다. 추가 또는 변경 계약은 기존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23조 (지급보증의 감면)

①광고주는 본 약관 제20조의 지급보증금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지급보증금액이 감면될 수 있으며, 감면금액은 미디어렙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1.광고주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외부감사 대상 기업으로서 채무상환 능력이 양호한 회사
- 2.신용평가업 또는 신용조사업업을 영위하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산정된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미디어렙이 정한 기준(A등급) 이상이 되는 경우
- 3.미디어렙이 자체 실시하는 지급보증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지급보증 감면을 인정받은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지급보증 감면을 받고자 하는 광고회사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미디어렙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지급보증 감면 신청 공문
- 2.관련 근거 서류(기업신용평가등급서 등)

③광고주가 미디어렙으로부터 지급보증 감면을 인정받은 경우 미디어렙과 광고주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며 지급보증 감면의 적용은 해당 계약 체결이후부터 적용이 됩니다.

④미디어렙은 지급보증이 감면된 광고주의 재무상태, 신용상황 등이 변동될 경우 지급보증 감면 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광고주는 이에 따르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광고주의 사유로 해당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광고주는 지급보증 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합니다.

제6장 마감

제24조 (일정)

마감은 월 단위로 이루어지고, 마감일은 광고운행 발생 월의 익월 1일이며 그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을 마감일로 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미디어렙은 마감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마감 자료 제공)

미디어렙은 미디어렙의 방송광고판매시스템 또는 이메일 등 전자문서를 통하여 마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합니다.

- 1.거래명세표(소재별, 광고주별 거래명세표)
- 2.기타(마감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위해 미디어렙이 제공하는 각종 자료)

제26조 (마감 관리)

①광고주는 청약한 방송광고의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청약한 내용과 다르게 방송광고가 집행될 경우 즉시 미디어렐에 이를 통보하고 본 약관 제8조에 따라 협의를 합니다.

②본 약관 제3조 제1항 각 호의 광고주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원할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미디어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7장 광고료 청구 및 세금계산서

제27조 (광고료 세금계산서 발행)

①미디어렐은 광고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매월말 기준으로 발행되는 월 합계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광고주가 폐업 등으로 월말일자로 발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발행합니다.

②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에 착오가 없도록 광고주는 본 약관 제3조 제1항 각 호의 광고주 정보의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전자세금계산서상의 광고주는 방송광고거래신청서상의 광고주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제28조 (가산세)

①본 약관 제27조 제1항의 불이행으로 세법상 발생하는 가산세 등의 문제는 미디어렐의 책임으로 합니다.

②본 약관 제27조 제2항, 제3항의 불이행 또는 지체에 따라 세법상 발생하는 가산세 등의 문제는 광고주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8장 간접광고에 관한 특례

제29조 (간접광고의 특례)

간접광고 영업대행에 관한 업무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본 약관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되, 이 장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이에 따릅니다.

제30조 (용어의 정의)

간접광고 영업대행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다음의 용어는 각 항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릅니다.

①‘노출’은 방송프로그램내에서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화면에 나

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②'노출횟수'는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시행된 노출의 횟수를 말하며, 이때 1회는 한 회 방송분당 한 장면에서 상표, 로고 등이 노출되었을 때로 정의합니다. 단, 청약사항에 따라 1초 노출 또는 방송프로그램 1회 방송을 노출 1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간접광고 판매의뢰서'는 미디어렐에 간접광고 판매를 의뢰하기 위하여 매체사가 방송프로그램에 간접광고를 노출하고자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노출 가능한 간접광고의 유형, 노출방식 등을 기재한 서류를 말합니다.

④'간접광고 이행의뢰서'는 광고주가 판매의뢰서를 토대로 노출품목, 노출방식 등 간접광고 노출에 관한 세부적인 이행사항을 기술한 서류를 말하며 매체사가 수락하면 간접광고의 내용으로 확정됩니다.

제31조 (예고방송, 재방송, 연장방송)

①간접광고로 청약된 방송프로그램이 예고방송된 경우, 그 예고방송에 대해서는 간접광고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②간접광고로 청약된 방송프로그램이 재방송된 경우, 그 재방송에 대해서는 간접광고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③간접광고로 청약된 방송프로그램이 연장방송된 경우, 연장방송분에 대한 간접광고료 등 간접광고내용은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종전의 청약자가 연장방송분에 대해서도 계속 간접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간접광고 이행의뢰서의 접수 등)

①광고주는 사전 고지된 제작일정에 따라 간접광고 제작에 차질이 없도록 미디어렐에게 이행의뢰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이행의뢰서는 미디어렐이 내용 확인 후 즉시 이를 매체사에 통지합니다.

③미디어렐은 매체사로부터 이행의뢰서에 대한 수정 요청시,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이를 광고주에게 통지하고 그로부터 3일 이내에 광고주로부터 수정 요청사항에 대한 수락 여부 또는 재협의 사항을 확인 후, 매체사에 수락 여부 및 재 작성된 이행의뢰서를 즉시 접수하여야 합니다.

④ 매체사는 제3항에 따라 통지된 이행의뢰서를 3일 이내에 확정(수락, 거부, 재수정)하여 미디어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33조 (간접광고계약 성립)

간접광고 이행의뢰서를 매체사가 이의 없이 접수하면 매체사, 광고주, 미디어렐 간 간접광고계약이 성립됩니다.

제34조 (상호협력)

①광고주가 방송프로그램의 내용 및 간접광고 진행상황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에 미디어렙은 이에 적극 협조합니다.

②광고주는 자신이 청약한 간접광고가 원활히 노출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광고주의 상호, 상품 및 영업장 등의 사용 또는 이용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제35조 (조기종영)

간접광고로 청약된 방송프로그램이 불가항력이나 공공적, 사회적 필요성 및 매체사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조기 종영될 경우, 간접광고료는 본 방송에서 실제 노출된 횟수에 한하여 청구됩니다.

제36조 (권리귀속)

①미디어렙과 광고주가 간접광고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발하거나 획득한 간접광고물, 노하우, 기술, 설계 등의 모든 권리의 귀속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마케팅 활동과 관련하여 광고주가 간접광고물을 활용할 경우에, 광고주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9장 기타

제37조 (변경사항 통보)

광고주는 다음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미디어렙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1.법인등기부등본
- 2.사업자등록증
- 3.법인인감증명서

제38조 (기한의 이익 상실)

①광고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미디어렙에 대한 모든 채무를 변제기한 만료전이라도 즉시 변제하여야 합니다.

- 1.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2.파산, 회생,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
- 3.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 4.광고주가 발행한 수표 또는 은행도 약속어음이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지급기일로부터 10일 이내 미디어렙에게 현금으로 변제하지 않을 경우
- 5.본 약관 제17조의 광고료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때 미디어렙은 기한의 이익 상실일 3영업일전까지 채무이행지체 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

는 사실을 광고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 상실일 3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광고주는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제39조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

- ①귀책사유로 이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②광고주가 미디어렐에 광고료를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익일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지급금액과 관련법(상법등)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연손해금으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③미디어렐의 귀책사유 없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이 취소 또는 변경되어 기 체결된 방송광고 청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방송되지 않거나 지체 또는 불완전하게 방송된 경우에 미디어렐은 이로 인하여 광고주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④간접광고의 노출이 방송법, 방송광고심의 기타 방송과 관련된 제반규정에 저촉되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광고주는 미디어렐과 매체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제40조 (계약의 해지)

미디어렐은 광고주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계약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가 허위가 있을 경우
- 2.본 약관 제37조의 변경사항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3.본 약관 제17조의 광고료 납부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4.광고주가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 5.기타 광고주가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제41조 (기타사항)

- ①미디어렐과 광고주는 이 약관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 미디어렐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을 준수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이 약관상의 의무를 이행합니다.
- ②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약관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 미디어렐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쌍방간 체결된 방송광고계약서 및 미디어렐과 광고주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③미디어랩과 광고주는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약관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담보제공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④방송광고 판매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상대방의 경영 및 일체의 정보를 본 약관에서 의도하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지 못하며,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에도 기밀을 지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제42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본 약관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4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 당시 방송중인 방송광고물은 이 약관 규정을 적용받는 것으로 봅니다.

<별첨양식:방송광고거래신청서>

방송광고거래 신청서

1.회사명		2.설립연월	
3.사업자등록번호		4.법인등록번호	
5.대표자		6.상시종업원수	명
7.자산총액	백만원	8.자본금	백만원
9.주사무소 주소			
10.매출액 (직전회계연도)	▪ 총매출액	백만원	
	▪ 방송광고매출액	백만원(%)	
11.실무담당 성명 및 전화번호			
12.담보	▪ 선입금 :	원	
	▪ 금융기관 지급보증서 : (보증보험증권, 은행지급보증서)	원	
	▪ 국·공채권,산업금융채권 :	원	
	▪ 예금담보증권(질권) :	원	
	▪ 특이사항 :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법인인감)			
*첨부서류 : 1.법인등기부등본 1부. 2.법인인감증명서 1부 3.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최근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각 1부.			
주식회사 미디어랩에이 귀중			

방송광고 계약서

광고주는 미디어렙으로부터 다음의 방송광고거래이용약관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숙지한 후 약관을 교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인)

- ☐ 총칙 (약관의 목적, 신고, 변경 및 적용 등)
- ☐ 방송광고 계약 체결 (계약체결시 첨부서류, 계약기간)
- ☐ 방송광고 청약을 위한 업무 (방송광고요금, 시급, 판매방식, 결합판매 등)
- ☐ 방송광고료 지급 (결제방식 등)
- ☐ 지급보증 (지급보증방식, 금액, 연장, 교체, 변경, 감면 등)
- ☐ 신탁마감
- ☐ 세금계산서 발행
- ☐ 간접광고에 관한 특례
- ☐ 기타사항 (기한의 이익상실, 손해배상, 지연손해금, 계약의 해지, 분쟁해결 등)

주식회사_____ (이하 '미디어렙'이라 함)와 주식회사_____ (이하 '광고주'라 함)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된 미디어렙의 방송광고거래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함)에 기초하여 방송광고 위탁대행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합니다.

제1조(목적) 미디어렙과 광고주간 방송광고 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적용)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방송광고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3조(광고료 지급) ①광고료는 방송광고 청약시 현금 선입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후불 납부시 광고주는 본 약관 제18조에 따라 지급보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청약한 광고료에 대해 미디어렙의 청구에 따라 방송광고를 한 당월의 광고료를 미디어렙에 익월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로 합니다.

③광고주는 광고료에 대해 당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평균 3개월 이내에 현금화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타 이외의 방식으로 지급할 경우 미디어렙과 합의 후 지급하여야 합니다.

1.현금

2.광고주가 발행한 수표 또는 은행도 약속어음

3.한국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된 상장회사가 발행하거나 배서한 수표 또는 은행도 약속어음

4.표지어음

5.광고주의 기업구매 전용카드, 외담대(매담대) 등 전자결제

④광고주가 광고료 결제방식을 현금으로 선택시 제2항의 기일 내에 광고료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급기일 조정을 미디어렐에 요청을 하고 그 요청에 대해 미디어렐과 사전 합의후 지급기일을 조정할 수 있으나, 정해진 지급기일(익월말)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⑤광고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3항에서 정한 3개월 이내 현금화가 안되는 결제방식으로 결제할 경우 방송광고 청약전에 미디어렐과 합의하여야 하며, 그 늘어난 기일만큼 지급보증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제4조(지급보증 제출) 광고회사가 제3조 제1항에 따라 후불로 광고료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미디어렐에게 제5조 각 호의 방식에 따른 지급보증을 청약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조(지급보증 방식) 광고주는 광고료에 대한 지급보증으로서 미디어렐에게 다음 각 호의 하나 또는 병용하여 방송광고 청약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1.정부에서 인가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 은행지급보증서 등)
-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발행 채권, 산업금융채권
- 3.금융기관 예금담보증권(질권)

제6조(지급보증 금액) 광고주는 지급보증금액은 당월 청약한 방송광고금액과 기 발생한 방송광고금액에 대한 결제방식의 현금화까지 발생한 외상거래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제7조(지급보증 감면) 광고주는 약관 제23조에 따라 지급보증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8조(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미디어렐은 광고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광고주에게 발행합니다.

제9조(간접광고에 대한 특례) 미디어렐과 광고주는 필요할 경우 간접광고에 대해 본 계약서의 특약서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특약서를 우선 적용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미디어렐은 광고주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계약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가 허위가 있을 경우
- 2.제3조의 광고료 납부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4.광고주가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 5.법률에 의거 광고주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6.기타 광고회사가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제11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고, 각 당사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조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으면 동일한 계약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됩니다.

본 계약서의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후 각 1부씩 보관합니다.

2014년 4월 일

미디어랩

상 호 :

주 소 :

대표이사 : (인)

광 고 주

상 호 :

주 소 :

대표이사 : (인)

<별첨약식:방송광고청약서>

방 송 광 고 청 약 서

광고주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결 재	담 당	팀 장

(주) 와 체결한 방송광고 계약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송광고를 청약함.

(단위 : 원)

일 자	매 체	내용	요 일	시 급	초 수	청약기간	기간중 횟수	단 가	기간중 청약총액	청약자 (인)
지 불 조 건								청약총액		

*부가세 별도

*광고주에 제시한 운행(안) 첨부

주식회사 미디어랩에이 귀중